



※ 이 감사결과는 감사당시 관계법령,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수감된 내용으로 감사이후 관계법령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8. 7. 4. ~ 7. 13. ≡

소안면사무소 정기종합감사 결과



완 도 군

(기 획 예 산 실)

I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소안면은 2016년 4월 종합감사를 받은 이후 감사를 받지 아니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업무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감사 실시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소안면사무소
- 감사범위 : 2016년 4월부터 2018년 3월말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8. 7. 4. ~ 7. 13.(8일간)
- 감사인원 : 감사담당 외 3명

4 감사중점사항

- 군수 지시사항 및 주요 민원처리 상황
-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 공사업무 설계·시공·준공검사의 적정성
- 민원업무 처리의 적정성 및 지방세 과세 누락사항
- 사회복지보조금 및 수당지급의 적정성
- 농지전용 및 사후관리, 각종 보조금지급 적정성 등

II. 감사결과

◎ 내구연수 초과 물품 관리 소홀

-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난 냉방기 등 207건에 대한 물품에 대하여 불용품의 매각 또는 폐기처리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음.

◎ 2017년 공무원 유연근무제 실행 부적정

- 소안면에서는 소속 공무원 □□□외 13명은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새 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연근무제 신청자가 초과근무로 변경시에는 해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연근무한 사실이 있고,
- 유연근무제 신청에 따른 조기 출근자와 야간 퇴근자는 지문인식 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출근만 지문인식을 등록하고 퇴근시에는 지문인식 등록을 하지 않고 퇴근 함으로써 유연 근무제 승인 시간 이전에 퇴근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 등 유연근무제 실행 취지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 2018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소홀

- 2018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일정별로 추진하지 않고 2017년 하반기 동사업에 참여했던 인부 6명중 4명을 동일하게 채용해서 공공 근로 사업함으로써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에 기회를 주지 않았음.
- 2018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제6장 임금 등 지급 및 근로조건 임금 지급방식은 격주 또는 월급(다음달 5일 이내)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8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4명에 대해서 2018년 4월분 임금과 5월분 임금 2개월분을 2018. 6. 14.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당직근무 및 청사경비 소홀

- 2016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xx회에 걸쳐 xx분에서 xx분 늦게 출근하고, 또한 xx분에서 xxx분까지 당직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조기퇴근 하였으며,

또한 무인경비시스템을 2016. 3월 ~ 2018. 5월말까지 총 xx회 작동하지 않고 퇴청함으로써 청사경비 공백을 초래 하는 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

◎ 비밀 열람기록전 관리 소홀

- 비밀을 파기 시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하단에 파기근거, 파기일자, 파기자, 확인자를 기재비밀한 후 날인하여 5년간 따로 편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xx건의 III급 비밀문서를 파기하면서 이를 보관하지 않았으며, 또한 2017~2018년 접수한 III급 비밀문서 x건에 대해 비밀열람기록전을 작성하지 않는 등 보안문서 관리를 소홀히 함.

◎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담당직위가 있는 6급 담당주사의 경우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담당급 x명의 전보인사가 있었음에도 인계 인수서가 작성되지 않아, 업무추진에 따른 책임한계가 불투명 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x명의 회계출납원이 변경되었으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출납사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취득세 과세누락에 관한 사항

- 2017. 07. 11.일 가설건축물 건축한 후 기간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소안면 xxxxx 취득세 총22건 x,xxx,xxx원이 과세 누락.

◎ 등록면허세 과세누락에 관한 사항

- 2015. 11. 13.부터 2017. 11. 3.사이 소안면 소안로 xxx 등 25건의 xxx,xxx원의 등록면허세 과세누락.

◎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납입 지연

-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2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제3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봉투판매인에게 판매할 때에는 봉투판매인으로 하여금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 세입금 수납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2016 ~ 2018년도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서 최소 x일에서 최대 x일까지 늦게 입금하는 등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업무를 소홀히 함.

◎ 경로당 및 경로복지센터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소홀

- 경로당 및 경로복지센터에서는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전용카드를 일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출의 대부분을 간이영수증으로 정산하고 있으며, 2016년 ~ 2017년 기간중 운영비로 지출이 불가한 각종 물품구입(김치냉장고 등) 및 보수공사, 중식비 등으로 부적합하게 지출.

◎ 통합사례관리 방문상담 연간계획 미수립

- 2017년 통합사례관리 방문상담 연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통합사례관리 중점관리대상자 방문상담시 2017 읍면동 맞춤형 복지 업무매뉴얼 서식9번 모니터 상담지를 이용 가구를 방문하여 상담지를 작성 하여야하나 메모지에 적어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방문상담 업무를 소홀히 함.

◎ 이륜자동차 업무처리 부적정

- 취득세 납입대상 소안면 소안로 xxx 외 1명의 취득세 납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 번호를 부여하여 총 67,900원의 취득세를 징구하지 못하였고, 법률에 규정된 전자수입증지 2건 6,000원을 첨부받지 아니하고 신고서 수리하였으며, 또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 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자동차),의무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는데도 구비서류를 징구하지 않는 등 이륜자동차 등록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

◎ 2017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부적정

-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17년 8월 7일부터 '17년 9월 29일까지 54일간 추진하면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전교육을 실시 하지 않았고 세대명부에 의거 사실조사를 하였으나 세대주(원)및 이장 확인이 안된 무단전출자 또는 행불자, 사망자 등 12명에

대해서 최고·공고 ,직권조치, 주민등록표 정리를 실시하지 않고 종료 한 사실이 있음.

◎ 민원업무 지연처리에 관한 사항

-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xx건의 민원을 처리기한을 경과하여 지연 처리 하는 등 민원사무 업무를 소홀히 함

◎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시 첨부서류 미보관에 관한 사항

- 2016~2018년 감사일 현재까지 대리인에 의한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시 첨부서류인 총 xx건의 신분증 사본을 미 보관하였으며 또한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시 총 xxx건을 처리하면서 첨부서류인 신청기관의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미보관 하였으며, 교부 신청서 서식도 개정<2016.12.30.> 전 서식을 사용하는 등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업무를 소홀히 함.

◎ 공용차량 이용(관내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2017년도 직원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지방xx7급 xxx 외 1명의 출장자에게 일비의 2분의1을 감액 하지 않은채 총 30,000원 지급.

◎ 세출예산 통계목 집행에 관한 사항

- 사무관리비로 집행해야 할 향우회참석 차량임차비 및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처리비 등 15건 16,037천원과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해야 할 행사에 따른 화분 및 꽃다발 구입비 1건 1,160천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집행해야 할 재부 소안향우회 정기총회 참석 민간인 여비 1건 1,032천원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

◎ 일반운영비 물품 취득에 관한 사항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인 네비게이션 외 1종 3,910천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소모성 물품이 아님에도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

◎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각종 계약체결에 따른 대금 청구액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적정하게 징구하여야 하는데도 소안면 무궁화동산 및 달목공원 조림수 비료 구입 등 18건, 820천원을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임에도 채권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적게 매입하였는데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

◎ 물품구입 등 지출결의서 검수작성에 관한 사항

- 제71회 식목행사에 따른 재료 구입외 xx건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 절차에 의한 물품구매나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였고, 규정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도 계약내역서 및 승낙사항 등을 기재하는 뒷장 작성 및 계약상대자의 날인을 누락하여 집행 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태극기 게양마을 및 도로변 국기국입 등 xx건에 대하여 약식 계약도 실시 하지 않고 청렴서약서, 보증각서, 수의계약각서 등 계약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대금을 집행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 급량비 지급에 관한 사항

- 관외출장여비에 식비를 지급하고도 당일 급량비 등 총 xxx건 xxx천 원을 중복하여 급식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소안면에서는 2016년 25건, 2017년 29건, 2018년 6건 등 총 60건의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로 집행하면서 지출증빙용인 현금영수증이 아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용하여 지출하였으며 또한 급량비 지출은 1개월 미만의 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나 2016. 04. 25. 소안면 민원담당(1~2월)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2개월분을 일괄 지출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급량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 시설부대비 목적외 사용에 관한 사항

-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공사 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음료수(드링크) 및 차량유지 유류 구입에 따른 소요경비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나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따르지 않고 시설부대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

◎ 2017년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 부적정

- 2017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 하면서 지원 대상자가 신청내용 확인을 위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이장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장에게 확인받지 않고 제출 하였으며 신청 내용 확인을 위한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 되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접수 하였으며, 또한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된 신청서는 농어업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부(농지, 임야, 가축, 어선【90톤이하】, 양식장(행사계약) 등)를 통하여 영농 규모 등을 확인 하여야 하나 확인 하지 않았으며
- 아울러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장회의, 반상회보, 각종 회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함에도 대상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 취득농지가 불법 형질변경 되었거나 임야화 되어 복구해도 농지로 이용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농업경영에 이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발급 통보 하여야 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담당자는 해당 농지가 불법 형질 변경되었음을 확인 하고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통보하였고, 해변 및 임야화 되어 농업경영이 불가능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통보 한 사실이 있음.

◎ 해양수산사업 시설물 사후관리 소홀

- 「해양수산 보조 및 용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양수산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리대상 사업중 2012년~2017년에 설치된 해양수산시설물 24개소(다목적인양기 11개소, 복합다기능부잔교 9개소, 쓰레기집하장 4개소)의 경우 관리

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연 1회 정기적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을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하나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미점검 하는 등 시설물 사후관리 소홀.

◎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기간제근로자 관리 소홀

- 2016년 ~ 2018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48,250천원 인건비로 14차례에 걸쳐 357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하면서 고용·산재보험을 미가입 하였으며,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인부사역시 만60세 이하인자를 근로계약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하나 총357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같이 xxx(67)을 포함하여 xx명에 대해 연령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등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업무를 소홀히 함.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관리 소홀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관리하면서 '16. 5. ~ '18. 4월 기간 중 비 또는 눈이 내리는 날(강수량 기준 10mm 이상) xx일간 야외근무가 불필요한 경우 실내에서 안전교육, 직무교육, 기타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여야하나, 산불진화차량 점검 등 지시사항은 있지만 실제 근무내역이 없고 사무실 대기 등만 실시하여 대부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근무일지도 총 xxx회 결재를 하지 않는 등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관리 소홀.

◎ 민방위 업무 및 필수 장비 관리 소홀

- 2016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필수장비 전자메가폰 등 4종 5개가 부족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장비 보관창고 관리책임자 미지정과 필수장비에 대한 관리 대장을 비치하지 않는 등 민방위 업무와 필수장비 관리 소홀.

◎ 건설공사 감독소홀 및 정산소홀

- 소안항 공원 조성사업 등 5건의 부족 시공된 x,xxx,xxx원에 대한 감액 또는 재시공 요구 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등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 소홀.

◎ 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3항,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 “소안면 □□□□ 보수공사”를 2016. 7. 11. (주)□□공사 대표 ◇◇◇와 19,740천원에 계약 등 6건을 체결하고 환경보전비 0.8%에 대한 정산확인 없이 준공처리하여 환경관리에 대한 비용 807,556원(제경비 미포함)을 과다 지급.

◎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 2016~2018년 하자검사 대상인 ◇◇◇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 계획 수립 및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하자담보책임기간내 시설물의 하자발생에 대해 시공회사로 그 보수책임을 이행토록 하는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요구업무를 소홀히 함.

◎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 소홀

- 소안면에서는 의용소방대 사무실 외 1건의 공용건축물을 건축협의 없이 증축하여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건축행정 업무를 저해하고 건축물관리에 소홀히 함.

◎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소홀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허가대상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고대상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허가권자는 허가 및 신고 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하고 그 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존치기간의 연장신고가 불가한 가설건축물이 철거 등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방치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총 ◇◇건의 가설 건축물축조신고에 대하여 존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존치기간의 연장 또는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소홀히 함.

◎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설계도서는 실시설계 회사에서 납품하여야 할 사항이고, 현장관리에 필요한 도면복사, 도면출력은 시공회사에서 공사를 위해 수행할 사항인데도 시설부대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